

“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



수 신 전 조합원사 및 매립협회 회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매일 송부**  
병행 문서】

참 조 영업부서장

제 목 「폐기물 적정처리 준수 및 처리기피 민원 해소 당부」 알림(긴급)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최근 폐기물 소각·매립업체들이 폐기물 반입을 기피하는 한편, 처리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조합원사와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회원사들이 거래질서 위반으로 인한 관련 법률 저촉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불임과 같이 당부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은 엄격히 구분하여 반입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처리요청 시 처리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반입 받으시고 향후 배출처 및 수집·운반업체에게도 불연물, 가연물 등의 구분반입 준수 요청을 사전 홍보하여 고의적인 처리기피 또는 처리단가를 인상하였다는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조합과 협회에서는 최근 소각·매립업체들의 위탁 의뢰량, 수탁가능량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들과 최근 업계 실상을 협의코자 하오니 불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17.07.21(금)까지 조합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환경부,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처리기피 등 민원사항 알림」 문서 사본 1부.  
 2.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1부.  
 3. 소각·매립 폐기물 위·수탁 현황 조사표 1부. 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장**



대리 김정훈 팀장 정동현 사무국장 장기석 부이사장 진원기

이사장 박무웅  
 회장 이민석

협조자

시행 한국조 2017 - 353호 (2017. 7. 19) 접수  
 한매협 2017 - 24호  
 우 07573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66, 11층(등촌동, 우리벤처타운) / www.krema.kr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rema@krema.kr / 비공개

붙임 1.



#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처리기피 등 민원사항 알림

1. 평소 환경보전을 위한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최근 우리 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폐기물처분업체에서 폐기물 처리를 기피하거나 급격한 처리비용 인상에 따른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의심하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귀 조합(협회)은 회원사인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계도와 폐기물배출업체,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폐기물처리실태, 추가처리 가능 회원사 안내 등을 통해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회장

주무관	<u>윤현식</u>	환경사무관	<u>배문건</u>	과장	전결 2017. 7. 18. 홍정섭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4143	(2017. 7. 18.)	접수		
우	30103	<u>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u>	/ <a href="http://www.me.go.kr">http://www.me.go.kr</a>		
전화번호	044-201-7372	팩스번호	044-201-7376	/ <a href="mailto:hsyun@me.go.kr">hsyun@me.go.kr</a>	/ 비공개(5)

## 환경부,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 <민원 사례 1>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입니다.

작금, 중간처리(소각)장을 운영하는 개인 및 환경부지정 업체에서는 기존 업체의 반입은 받아주고 신규업체는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톤당 처리비는 2016년 초 7~8만원 하던 것이 2017년 초 13만원하다 현재 17만원(얼마나 처리비 단가가 오를지 모름) 천정부지로 오르고 중간처리(소각) 업체들은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폐기물 이력제 **올바로시스템**의 입력문제로 발생~처리까지 입력을 교묘히 이용 부당한 이익을 폐기물 발생자들의 부담을 천배만배 증가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대책 및 공정 처리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민원 사례 2>

저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종사자입니다. 최근에 폐기물처리 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빈번히 발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1. 최근 1~2년사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두배 가깝게 상승하여(톤당 80,000에서 160,000) 처리 하는데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처리업체에서는 업체 사정으로 인해 (처리장화재, 과다물량입고 등) 입고 제한을 하여 **한 달에 두세번 정도 밖에 입고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3. 정부에서는 올바른 폐기물처리를 위해 제도건안에서 처리를 유도 하지만 최종처리업체의 시설이나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4. 폐기물처리업은 업무 특성상 공익의 성격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 운영함으로써 최종처리업체끼리 담합이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방

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최종 처리업체에서는 거대한 조직과 시스템으로 수집운반업체가 하는 일까지 직접 거래 계약을 맺어 **수집운반업체의 존폐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빨리 실태 파악을 해서 저희와 같은 소규모 수집 운반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공기간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처리업체를 충분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단체활동지침」에 의거 아래에 명시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다.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라.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마.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바.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사.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아.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자.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 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카.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 타.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 파. 기타 행정지도 등에 관한 행위

※공정위 고시 제2013-9호 「사업자단체활동지침」

- ② 국내 경쟁관련법 및 규정상 불공정 행위라고 의심될 만한 발언이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떠한 사안도 논의해서는 안 된다.
- ③ 조합[협회] 및 조합원사[회원사]는 이사회 뿐만 아니라 권역별회의 및 비공식 모임에서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소각·매립 폐기물 위·수탁 현황 조사표

(2017. 7월 현재)

### 1. 소각

시설용량 (톤/일)	허용보관량 (톤)	위탁 의뢰량 (톤/일) <i>(A)</i>	수탁 가능량 (톤/일) <i>(B)</i>	수탁 불가능량 및 사유		처리단가 (톤/원)	단가 책정 사유(VAT별도)
				불가능량 (톤/일) <i>(A - B)</i>	불가능 사유		

### 2. 매립

허기용량 (m <sup>3</sup> )	잔여매립장 (m <sup>3</sup> )	위탁 의뢰량 (톤/일) <i>(A)</i>	수탁 가능량 (톤/일) <i>(B)</i>	수탁 불가능량 및 사유		처리단가 (톤/원)	단가 책정 사유
				불가능량 (톤/일) <i>(A - B)</i>	불가능 사유		

상기와 같이 폐기물 위·수탁 현황을 제출합니다.

2017. 07.

업체명 :  
대표자 :  
담당자 :